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3. 12. 22 선고 2023가단14301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

변 론 종 결 2023. 11. 10.

판 결 선 고 2023. 12. 2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[별지]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 2022. 10. 3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8,064,1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8,064,1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위적 청구취지: 주문 기재와 같다.

예비적 청구취지: [별지]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/4 지분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22. 10. 31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2019. 8. 12. 주식회사 D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권(기준일 2019. 7. 31., 원금 5,690,210원, 이자 10,413,656원)을 양수하였고, 위 채권양도는 2019. 9. 18.자 내용증명 우편으로 C에게 통지되었다.

원고가 C을 상대로 위 양수금에 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(청주지방법원 2022차전2783) ‘C은 원고에게 19,271,583원 및 그중 5,690,210원에 대하여 2022. 5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.7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’는 내용의 2022. 5. 9.자 지급명령이 2022. 5. 27. 확정되었다.

원고의 C에 대한 위 채권액은 2023. 7. 20. 기준 20,904,654원(= 원금 5,690,210원 + 이자 15,214,444원)이다.

나. C의 모친인 E(이하 ‘망인’)은 2019. 6. 14. 사망하였고,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, F, G, C(각 상속지분 1/4)은 2022. 10. 31. 망인의 재산인 [별지]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)을 피고가 단독 소유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으며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),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‘협의분할에 의한 상속’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(청주지방법원 2022. 11. 4. 접수 제113696호).

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‘근저당권자 H조합, 채무자 G, 채권최고액 39,000,000원’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(이하 ‘이 사건 근저당권’), 그 피담보채무 26,743,059원이 2022. 9. 7. 변제된 후인 2022. 9. 29.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.

다.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은 적극재산 없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.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59,000,000원이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6호증, 을 제1, 3호증(가지번호 포함, 이하 같다)의 각 기재, 이 법원의 1기관, 법원행정처, 청주지방법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가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일 전에 성립한 것이므로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.

나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C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,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.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, 을 제2 내지 7호증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.

다.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.

라.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는, 채권자와 수익자 모두 가액배상을 원하고 있는 점, 가액배상에 의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채권자취소권의 목적 달성에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경우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,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(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다107198 판결 등 취지 참조).

마.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가액배상액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의 범위 내로서 8,064,122원[= (이 사건 부동산 가액 59,000,000원 -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26,743,509원) × C 상속지분 1/4, 소수점 이하 버림]이다.

바. 따라서 사해행위인 이 사건 분할협의를 8,064,12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8,064,12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병만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(1동의 건물의 표시)

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 동[도로명주소]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

라멘조 슬라브지붕 5층 아파트

1층 내지 5층 각 298.67㎡

(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)

1.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대 2012㎡

(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)

제1층 호 라멘조 52.03㎡

(대지권의 표시)

1 소유권대지권 2012분의 41.1633 끝.

